##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7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 : 윤후덕ㆍ이원욱ㆍ임오경

박 정ㆍ전혜숙ㆍ우원식

이형석 · 김정호 · 송갑석

고용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세액 공제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동제도 취지에 상응하는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최근 영상콘텐츠산업은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소비자의 수용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국내·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 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 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 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분의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분의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정 아 행 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영상콘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7(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 경우에는 100분의 15,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 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 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 세에서 공제한다.     |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